

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1953   |
| 의 퇴 인 | 신장식의원     |
| 회 답 일 | 2025.8.4. |
| 추계번호  | 25D4179   |

#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5개 보훈관계법 개정안<sup>1)</sup>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을 70%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5억 5,800만원, 2030년 74억 6,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75억 5,300만원(연평균 75억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6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|
| 수송시설의 이용지원<br>보조율 70% 수준으로<br>인상(안 제54조의4) | 7,558 | 7,534 | 7,510 | 7,487 | 7,464 | 37,553 | 7,510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제54조의4(수송<br>시설의 이용지원) |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| 재량규정 |

## 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|
| 1  | 안제54조의4(수송<br>시설의 이용지원) | ○    | -              |

#### 1) 5개 보훈관계법 개정안

-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, 제2211953호)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, 제2210848호)
-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, 제2210849호)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, 제2210851호)
-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, 제2210852호)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에서 5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른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은 개별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(보훈보상대상자 포함)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
- 국가보훈부에 따르면,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시설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
  - 한국철도공사 평균 보조율: 36.4% / 도시철도공사 보조율: 0%
  - 2024년 기준 1인당 한국철도공사 이용금액은 54,092원이나, 이 중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18,213원임

[표 2]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보조금 지급 현황: 2020~2024년

(단위: 명,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20              | 2021              | 2022              | 2023              | 2024              | 평균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한국철도공사<br>(고속철도) | 대상인원         | 116,931           | 115,789           | 114,398           | 119,740           | 118,761           | 117,124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이용금액         | 4,751             | 4,641             | 5,593             | 6,217             | 6,424             | 5,525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보조액<br>(보조율) | 2,403<br>(50.58%) | 1,663<br>(35.83%) | 1,663<br>(29.73%) | 2,163<br>(34.79%) | 2,163<br>(33.67%) | 2,011<br>(36.40%) |
| 도시철도공사<br>(도시철도) | 이용횟수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| 4,682,342         | 4,865,694         | 4,774,018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이용금액         | 2023년부터 전산 연계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6,345             | 6,593             | 6,469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| 보조액(보조율)     | 보조 없음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주: 1) 대상인원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임

2)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보훈보상대상자도 수송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에 포함한 것임

자료: 국가보훈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본 추계에서는 고속철도의 경우 보조율을 현행(36.40%)에서 35%p 추가 인상하고, 도시철도의 경우 보조율을 70%로 하여 각각 보조율이 70% 수준이 되도록 인상함
-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<sup>2)</sup>과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<sup>3)</sup>에 따르면, 2004년 이후 고속철도(KTX) 요금과 도시철도(서울) 요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되었음
  - 고속철도 요금 연평균인상률: 1.36% / 도시철도 요금 연평균인상률: 3.20%

2)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(<https://www.data.go.kr/en/data/15119333/fileData.do>)

3) 서울특별시 분야별정보(<https://news.seoul.go.kr/traffic/archives/345>)

[표 3] 고속철도(KTX) 및 지하철 요금 인상 현황: 2004~2025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| 2004   | 2007   | 2012   | 2015   | 2023   | 2025          | 연평균<br>인상률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고속철도<br>(서울-부산)   | 45,000 | 49,800 | 57,300 | 59,800 | 59,800 | 59,800        | 1.36%      |
| 도시철도<br>(서울, 1구간) | 800    | 900    | 1,050  | 1,250  | 1,400  | 1,550<br>(예정) | 3.20%      |

자료: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본 추계에서는 도시철도 요금이 2025년 6월 28일부로 인상될 예정임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 동안 도시철도 요금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고속철도 요금만 매년 1.36%로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함
- 개정안은 부칙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수송시설(고속철도, 도시철도)별 이용금액에 각각의 보조율(고속철도 35%, 도시철도 70%)을 적용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5개 보훈관계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보조율을 70% 수준으로 인상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5억 5,800만원, 2030년 74억 6,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75억 5,300만원(연평균 75억 1,0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|        | 2026    | 2027    | 2028    | 2029    | 2030    | 합계     | 연평균  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고속<br>철도 | 대상인원   | 118,211 | 117,349 | 116,493 | 115,643 | 114,800 | -      | -     |
|          | 이용금액   | 6,569   | 6,610   | 6,651   | 6,692   | 6,734   | -      | -     |
|          | 추가보조율  | 35%     | 35%     | 35%     | 35%     | 35%     | -      | -     |
|          | 추가재정소요 | 2,299   | 2,314   | 2,328   | 2,342   | 2,357   | 11,640 | 2,328 |
| 도시<br>철도 | 대상인원   | 118,211 | 117,349 | 116,493 | 115,643 | 114,800 | -      | -     |
|          | 이용금액   | 7,512   | 7,458   | 7,403   | 7,349   | 7,296   | -      | -     |
|          | 추가보조율  | 70%     | 70%     | 70%     | 70%     | 70%     | -      | -     |
|          | 추가재정소요 | 5,259   | 5,220   | 5,182   | 5,144   | 5,107   | 25,912 | 5,182 |
| 합계       |        | 7,558   | 7,534   | 7,510   | 7,487   | 7,464   | 37,553 | 7,510 |

주 1. 대상인원은 2025년 기준 인원(119,080명)에 연평균증감률( $\Delta 0.73\%$ )을 적용함  
 2. 이용금액은 고속철도의 경우 2024년 기준 1인 평균 이용단가(54,092원)에 연평균인상률(1.36%)을 적용하고, 도시철도의 경우 연평균 이용횟수(41회)와 이용단가(1,550원)를 각각 적용함  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보훈대상자의 수송시설 이용행태, 수송시설에 대한 보조율, 수송시설 요금인상 등의 과거 추이를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, 개정안이 시행되어 이용행태와 요금 등이 변경되면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장삼열 | 김안나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|
| 장삼열 | 02-6788-4831 | jsy@na.go.kr |